

취업성공패키지 I



취업성공패키지 I

참여대상

만 18~69세 이하의

- ① 생계급여수급자(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 ②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
- ③ 북한이탈주민(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) ④ 국가유공자(취업지원대상자)
- ⑤ 위기청소년(만15~24세) ⑥ 여성가장 ⑦ 결혼이민자 ⑧ 신용회복지원자 ⑨ 특수형태근로자
- ⑩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⑪ 영세자영업자(사업자등록자) -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(1년 이상)
- ⑫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원(아래 건강보험료 기준 참고)

※ 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신청(☎055-225-8012)
 ※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후 참여 가능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월납부액(원)	35,161	59,870	77,450	95,031	112,612	130,192	147,868

지원내용

※ 구직신청방법 : www.work.go.kr에서 로그인 후, 구직신청

1단계 (1개월)

진로상담, 취업경로 설정

- 집중상담, 직업심리검사,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,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
- ▶ (참여수당) 최대 25만원 지원

2단계 (6개월)

직업능력향상 (예산한도 범위 내 지원)

-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(직업훈련), 고용디딤돌,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훈련 등 카드한도 300만원, 훈련비 0~20% 자부담, 수강가능 훈련과정 3회로 제한 (일부 훈련과정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음)
- ▶ (훈련참여수당) 최대 6개월간 지원(일 18,000원, 월 최대 284,000원)
- ※ 훈련탐색 : www.hrd.go.kr

3단계 (3개월)

집중 취업알선

- 이력서·면접 클리닉, 일자리 정보 제공, 동행면접
- ▶ (참여수당) 취업알선 등 대면 상담 시, 월 1회 2만원 지급(총 3회)
- ▶ (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) 중위소득 60%이하자 상호의무협약체결(월 50만원, 3개월)
- ▶ (취업성공수당)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, 고용보험적용대상 근로자,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, 근속기간에 따라 3·6·12개월에 30·40·80만원을 지급

제출서류

- (공통) 신분증, 소득요건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내역(납부확인서) (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)
 ※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요청될 수 있음
- (그 외 참여자) 신분증, 참여 유형별 필요서류 상담 시 안내

추가혜택

고용촉진장려금
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1단계 초기상담 실시하고 1개월 이상 경과, IAP수립 후 2~3단계 참여중이거나 패키지 사업 종료 후 12개월 이내인 구직신청이 유효한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60~720만원 지급

취업성공패키지II



외부 전문 상담기관에서 진행

취업성공패키지II

참여대상

▶ (청년층) 만18~34세의

- ①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② 졸업하는 해의 1.1일 이후 고교 재학생
- ③ 대학(전문대)졸업 미취업자 ④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

※ '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'20년 5.1. 부터 '21년 8월 졸업예정자는 '20.11.1. 부터 참여 가능
 ※ 약학(약학, 한약학), 간호(간호학), 의료(의학, 치의학, 한의학, 수의학), 교육(유아교육) 재학생은 졸업예정년도 1.1일(또는 7.1일)부터 참여 가능

▶ (중장년층) 만 35~69세 이하의

- ①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②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원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월납부액(원)	58,602	99,783	129,084	158,385	187,686	216,987	246,447

지원내용

※ 청년층은 자기진단 실시 후 참여가능
 자기진단 홈페이지(<http://www.work.go.kr/pkg>)→로그인 후 자기진단 실시(인터넷, 모바일)
 자기진단을 통해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, 향후 취업지원 경로 설정에 활용

청년층

중장년층

1단계
(1개월)

1단계
(1개월)

진로상담, 취업경로 설정

- 집중상담, 직업심리검사,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,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
- ▶ (참여수당) 최대 20만원 지원

2단계
(6개월)

2단계
(6개월)

직업능력향상 (예산한도 범위 내 지원)

-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(직업훈련), 고용디딤돌,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훈련 등 카드한도 300만원, 훈련비 15~50% 자부담, 수강가능 훈련과정 수 3개로 제한 (일부 훈련과정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음)
- ▶ (훈련참여수당) 최대 6개월간 지원(일 18,000원, 월 최대 284,000원)

3단계
(3개월+3개월)

3단계
(3개월)

집중 취업알선

- 이력서·면접 클리닉, 일자리 정보 제공, 동행면접
- ▶ (참여수당) 취업알선 등 대면 상담 시, 월 1회 2만원 지급(총 3회)
- ※ 중위소득 60%이하자 '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' 신청가능

제출서류

- (중, 장년층) 신분증, 소득요건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건강보험자확인서,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내역(납부확인서) (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)
- (청년층) 신분증, 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제적증명서)
 ※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요청될 수 있음
- (그 외 참여자) 신분증, 참여 유형별 필요서류 상담 시 안내